

과도한 금주열풍으로 질식하는 개인의 자유

김 성 수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많은 사람들에게 2012년은 한국사회에서 금주열풍이 시작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애주가들조차도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해로우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언론에서 이른바 주폭(酒暴) 문제를 크게 이슈화하면서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술 마시는 사람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 일상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

이제 술에 대한 낭만이나 애주가들의 권주담 같은 것은 우리사회에서 빨붙일 곳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술 마시는 사람의 하나로서 “세상이 이렇게 도 메말라가는구나”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따지고 보면 술은 로마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술 때문에 각종 범죄와 사회적 병리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술 때문에 우정이 깊어지기도 하고 술 한 잔에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고 끊어져버릴 듯 했던 이성과의 만남을 극적으로 이어간 이야기도 우리 주위에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술이라는 존재는 그 위험 때문에 저 멀리로 추방하는 것 보다는 잘 달래서 자기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절제와 분수의 미덕이 요구되는 그런 일종의 필요악(必要惡)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최근 금주열풍과 주폭척결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타고 국회에 각종의 금주법안이 흥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금주법안은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주류의 소비와 광고를 규제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닥치고 금주’라는 말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누구든지 텔레비전방송에서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주류에 관한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고출연자가 주류를 직접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며, 옥외,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한다.

누구든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

“개인이 타인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문화적 법치국가의 핵심적 가치다.”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산의 일정한 구역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대학에 전면적으로 주류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축제 등 학생들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전과는 달리 학생들은 학업과 취업준비, 부업 등으로 인하여 매우 바쁘며, 취미활동이 다양화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과음하거나 음주만을 위한 모임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축제기간에는 교내 곳곳에 주점이 여전히 성업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시적인 축제기간 마저도

음주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성인인 대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을 너무 가볍게 보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교내 곳곳에 구청직원들이 상주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과연 국가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국가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념과 원칙을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든다. 음주하는 학생을 추격하는 구청 공무원과 이를 피해서 달아나거나 항의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7,80년대 시위학생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생이 숨바꼭질을 하던 구시대의 유쾌하지 못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금주법안들이 단속과 과태료가 난무하는 경찰국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할 뿐이다. 자고로 무엇인가 금지하고 규제하고 억누르는 정책만으로 성공한 예를 본적이 있는가?

또한 금주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기본권인 ‘마실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이 타인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문화적 법치국가의 핵심적 가치다. 산과 해변에서 술잔을 비우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 지인들과 삶의 의미를 토론할 수 있는 영혼을 지닌 문화적 동물이라는 점이 바로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는 이

유다. 특히 술이라는 음료가 인류문화사에서 가지고 있는 소울푸드(soul food)로서의 순기능도 무시하기 어렵다. “술은 백해무익한 것이니 당신과 사회를 위하여 정부가 나서겠다”는 생각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질식시키는 위험천만한 가부장적 국가관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구하는 계도활동에 그쳐야 하며, 시민이 협조하면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주류에 대한 과도한 광고금지도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나 스타들의 직업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들이 특히 청소년들에게 주는 악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광고 출연 연령을 제한하거나 특정종목의 선수나 영향력이 큰 연예인에게 선별적으로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권 위반으로 위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조상들의 격언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늘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하는 소중한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경험하면서 오늘날 생존의 기로에 선 영세사업자들이 과도한 금주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일 수 있다. 그 만큼 금주정책은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등 다변적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정부가 많은 시민들의 권리가 충돌할 때 상생과 조화의 원칙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금주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